

# '21년 6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업자명 : (주)지에스리테일

##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사업자	
21. 6.30	화상회의	9/10	6	-

- 시청자위원 불참자 : 박진용
- 방송사 주요참석자 :  
주운석(커뮤니케이션본부장), 신석한(심의팀장), 윤소영(차장),  
허남준(상생협력팀장), 오세영(차장), 박인진(매니저)

※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침에 의거 대면 접촉 최소화 위해 영상회의로 대체 진행하였습니다.

##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심의규정	합 계
0	2	0	0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합 계
건 수	2	0	0	0

다.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2건	2건	
방송 프로그램	<p><b>1. 라이선스 브랜드의 표현 범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류 판매 시 “철학” 에 대한 멘트 및 표현의 경우 효능을 평판으로 이전하면 객관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다고 생각함. 실제 제품 선택 시 다른 선택을 하는 등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고민 필요.</li> <li>- 라이선스 계약 시 본사에서 판매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 제조, 유통에 대한 계약 체결은 이례적임</li> </ul> <p>“철학”이라는 멘트 및 표현은 의류에도 기술력이 투여 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과대 광고라고 생각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사와 라이선스 계약서 내용을 보지 않는 이상 정확한 표현 및 멘트 사용 범위 등은 어려움</li> <li>- 철학과 노하우는 다른 표현 및 포함 범위가 다르지만 철학이라는 표현 보다는 노하우로 표현하는 방법 고려.</li> <li>- 본사에서도 가공, 변형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품질 및 이미지를 위해 시즌 별 디자인 제공함</li> <li>- 소재 및 만들 수 있는 기술력과 관련된 정보 제공을 노하우로 표현하고 있는데, 해당 범위 내에서 표현된다고 판단되거나 업체에서 허락한 경우 가능하다고 생각함</li> <li>- 라이선스도 샀고, 해당 업체로부터 관리 받을 걸로 보여져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li> <li>- 의류 판매 시 상품 디자인 반영 여부 확인 필요 디자인 받아서 승인 받고 검수하는 반면, 디자인 하고 제조해서 상표만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완전히 다른 제품이라 허위로 볼 수 있음</li> <li>- 사용하고자 하는 문구의 경우 라이선서에게 사용 문구 허가 받아야 함</li> <li>- “편안한, 설계” 등의 표현은 가능하나 철학은 문제된다고 생각</li> </ul>	<p>과대광고 및 허위 표현 관련하여 사전 심의 및 점검 강화 필요성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음. 방송함에 있어 주의 사항들에 대해 위원회의 의견에 적극 공감 및 수용하며 아래와 같이 개선 완료 하였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라이선스 제품 판매시 기술력 등 표현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 확보</li> <li>2. 광고적 표현은 관습적인 수준에서만 표현 가능</li> </ol> <p>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 당사의 제작진, 심의부서, 품질관리 부서와 협의하였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이슈 있는지 파악하도록 하겠음.</p> <p>&lt;21년 6월 조치완료&gt;</p>	5월

	<p><b>2. 인건 제품의 표현 범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몸의 열기를 밖으로 배출해주고, 탄력성 있어서 옷감 제조에 들어있다는 내용이 있음</li> <li>- 관습적 표현이 될 수 있다고 생각</li> <li>- 밉크와 상관없이 부드럽다는 의미로 소비자들은 밉크라고 생각하지 않듯이 용어가 주는 오인성을 생각 해야 함</li> <li>-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하여 "일명", "소위" 등 수식어 사용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함</li> <li>- 에어컨, 전기가 필요 없는 표현은 과대 표현이라고 생각함</li> <li>- 인건 : 인건 &amp; 레이온 특성에 대한 테스트 결과 있음 (통풍성,촉감보유)</li> <li>- 관용적 표현은 가능하다고 판단됨</li> </ul>		
--	--	--	--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내용	조치내용	조치일자	비 고
-	-	-	-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정보 공개 사항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GS홈쇼핑 홈페이지	시청자위원회 월간운영실적	인터넷

##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19. 09~ '21.08.)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
위원장	옥경영	•現 한국소비자학회 상임이사 •現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 교수	한국소비자학회	소비자보호단체	
부위원장	김정현	•現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現 한국방송학회 총무이사	한국방송학회	언론관련 시민학술	
위원	박진용	•現 한국유통학회 학회장 •現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한국유통학회	유통단체	
위원	최난설현	•現 유통법학회 이사 •現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단체	
위원	고경신	•前 CISCO 마케팅 총괄 상무 •前 아름다운가게 그린사업국 국장	아름다운가게	사회소외계층	
위원	최순옥	•장신대 사회복지학과 석사 •現 에델마을 사무국장	에델마을	사회소외계층	
위원	최윤정	•前 SBS 프로덕션 제작국 프로듀서 •現 이화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한국방송학회	언론관련 시민학술	
위원	정윤경	•現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전문위원 •現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사무총장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보호단체	
위원	정진환	•고려대 법학과 학사 •現 법무법인 김&장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위원	윤주호	•서울대 정치학과 학사 •現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변 동 사 항					

##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방송 프로그램	<p><b>영유아/어린이용 화장품류에 대한 표시 광고 주의사항 및 표현 가능 여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토피, 향 등 어린이 관련하여 문제된 사례가 있음 표시에는 문제가 없어도 쇼핑 호스트 멘트가 문제될 수 있음 어린이 소비자 제품은 별도 판매하지 않아서, 0세~14세는 범위가 큼 (6~7세의 경우 스스로 물건 구매하려고 함) 구매자와 소비자가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 대비하여 표기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li> <li>- 규정은 화장품법에 근거하는 행정 규칙임. 제재 수위가 높아 보이고, 화장품법이 최근 강화되고 있음</li> <li>- 안전/생명/신체/건강과 관련된 높은 가치를 품고 있는 규정으로 보임</li> <li>- 시행된 지 얼마 안됨(만1년), 최초 규율 대상의 파급력, 상징성이 있는 부분으로 보임</li> <li>- 다른 집행 사례가 (유사 사례) 나오기 전까지 보수적으로 접근 쇼핑몰은 영유아 관련 제품을 판매하면서 온 가족용으로 (역으로) 표기</li> <li>- 친환경/성분조사 거쳤고, 영유아 샴푸이지만 바디제품 및 온 가족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표기</li> <li>- 역으로는 가능하나 성인용을 온 가족용으로 하는 경우는 없음</li> <li>- 최근에 어린이 화장품이 많이 팔리면서 제품에 유해성분이 발견되어 어린이용 화장법이 개정됨 (법적으로 주 목적임)</li> <li>- 온 가족용 표현 주의</li> <li>- 통신으로 판매 시 유해성분 잘 파악하여 상품 가려서 판매</li> <li>- 온 가족용 표현은 영유아가 쓸 수 있는 거라고 비추어보기에 화장품법 위반으로 14세 이상 권장을 반드시 표기해야 된다고 생각</li> <li>- 쇼핑 호스트의 온 가족용 멘트가 법 위반 사항으로 비추어질 수 있으므로 만 14세 이상 표시 권장</li> </ul>	<p>영유아/어린이용 화장품류 카테고리를 새로 제정, 관리함에 따라 당사 또한 주의하여 방송하고 있음. 표현 범위에 대해 논의한 대로, 당사 또한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공감하고 당사의 제작진, 심의부서와 협의하여 개선방안 마련 후 차기 회의 시 보고 드리겠음.</p>	○		